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6. 5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우리구 이미지(CI) 개발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구(區) 심벌마크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포상용 용지 규격, 기념휘장 규격 모양 변경(별표 1, 별표 2)
 - 포상용 용지 규격(액자형, 책자형) : 별표 1
 - 기념휘장 규격(내국인용, 외국인용) : 별표 2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4. 20 ~ 5. 10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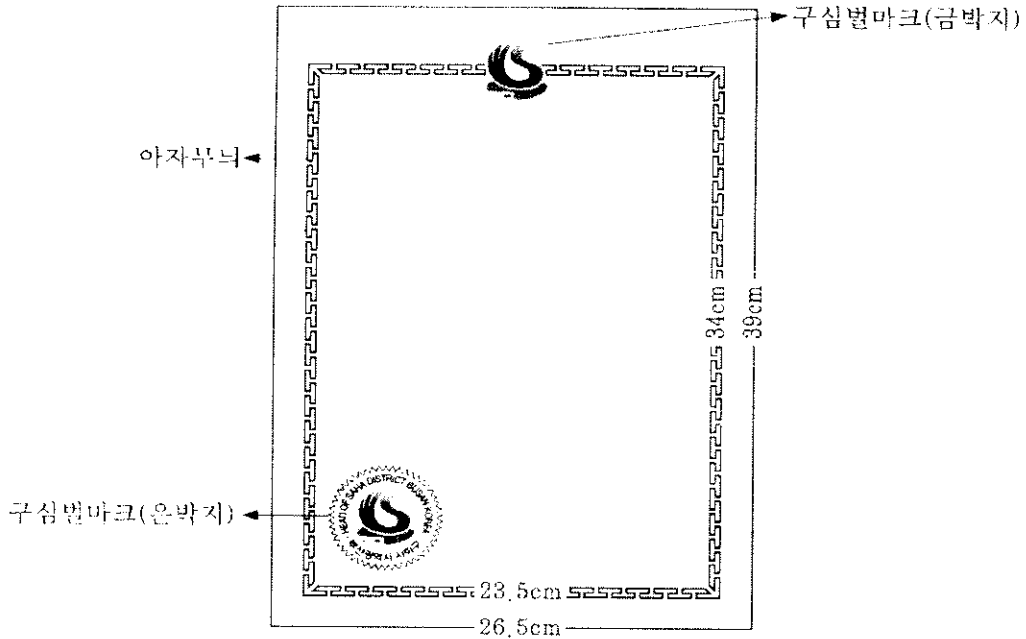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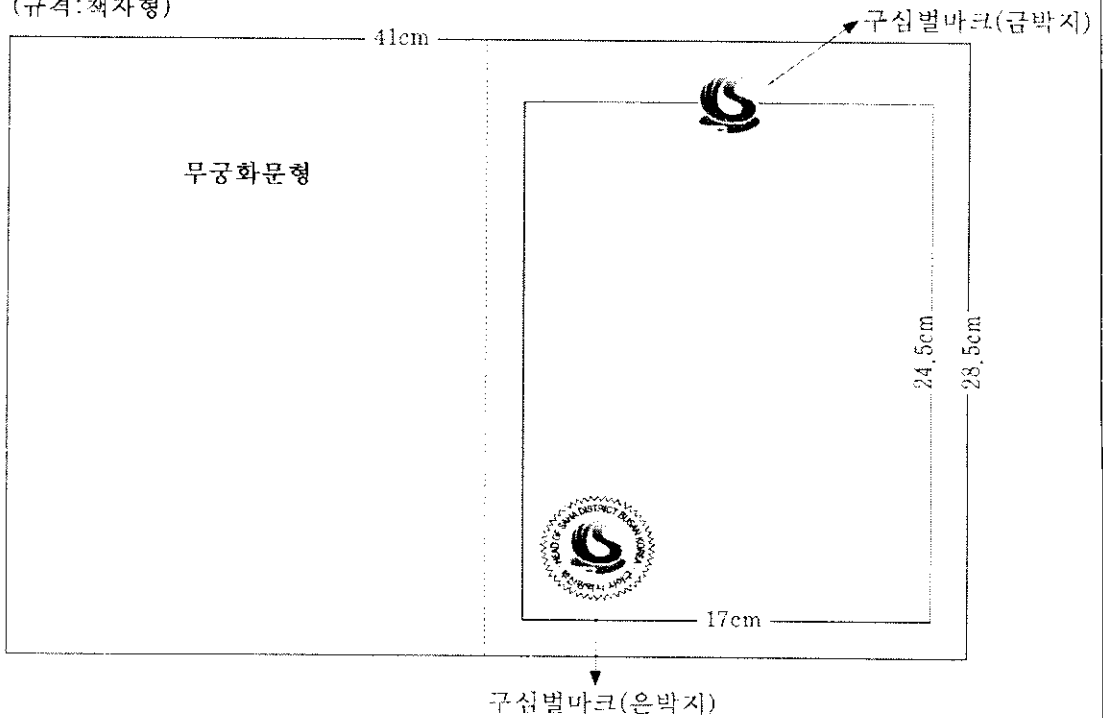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포상용 용지 규격(제11조제4항 관련)

(규격:액자형)



(규격:책자형)



[별표 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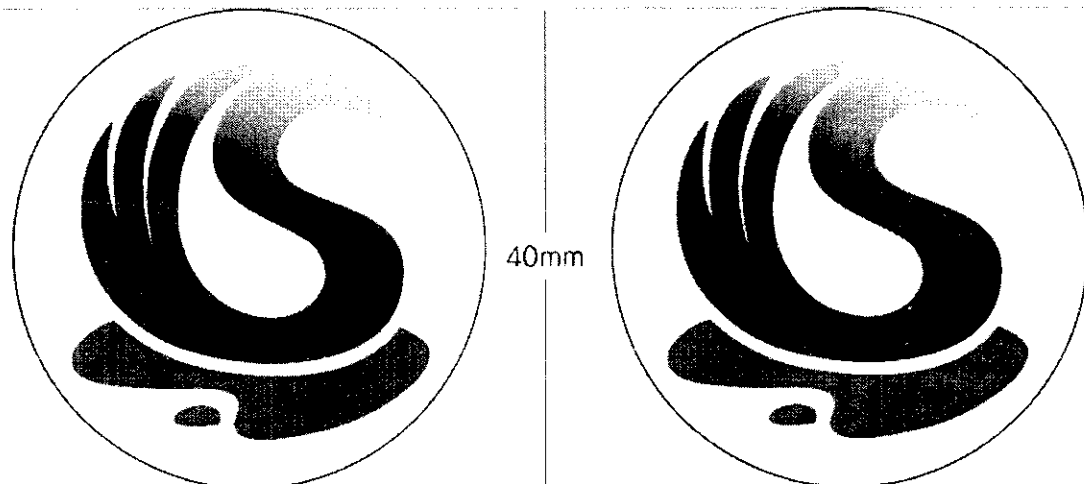
기념휘장 규격(제11조제4항 관련)

내국인용

외국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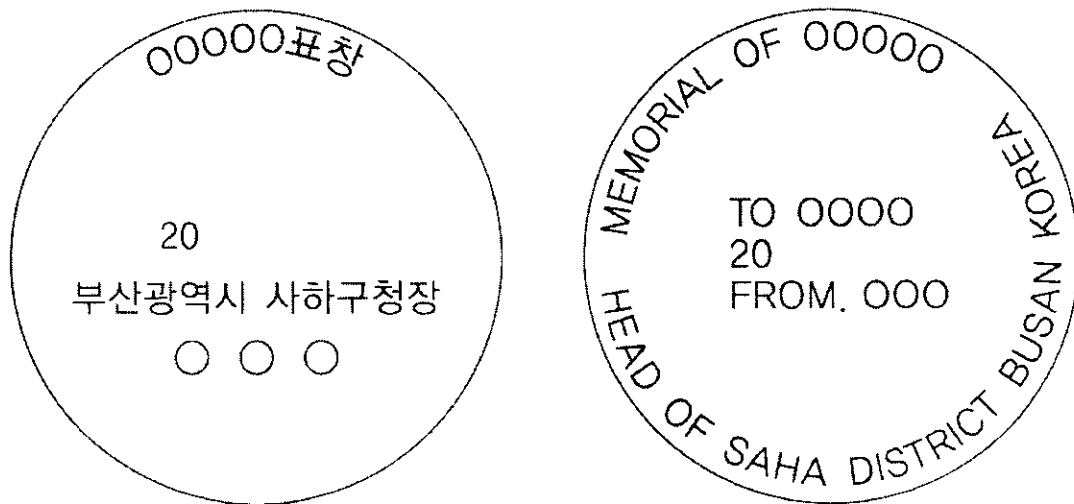
앞면

앞면



뒷면

뒷면



○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